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2월 6일

○ 회부일자 : 2006년 12월 6일

□ 제안 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52호, 2006.7.1시행)」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1개 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로 함(안 제1조)
- “담당관”을 “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로 함(안 제3조)

□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본청기구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조항이 새로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구체적인 설치·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